

제주지방법원 2020. 8. 10 선고 2019가단495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강남 담당변호사 이창주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

변론 종결 2020. 6. 29

판결 선고 2020. 8. 10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전 339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1993. 10. 18. 제주지방법원 접수제 47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소유관계

(1) I은 1938. 7. 1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(2)I의 차남인 원고는 1980. 12. 15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인 '구부 동 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'(1977. 12. 31. 법률 제 3094호로 제정된 것)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등기 (1)I의 동생이 자원고의 숙부인 J은 1993. 10. 18.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 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인'구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'(1992. 11.30. 법률 제 4502호로 제정된 것)에 따라 J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(이하 '이 사건등 기'라한다)를 마쳤다.(2)J은 1997. 12. 13. 사망하였고,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2, 3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원고의 주장

원고는 J에게 1983. 9. 10.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매도한적이없음에도 그은 위와 같이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등기를 마쳤다.

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J이 허위의 보증서를 토대로 이사건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사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어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방선옥

별지